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2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파주시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구 분	현 행	조 정	증 감	조 정 내 역
	정원수	정원수		
계	913명	966명	53	
시 본 청	383명	383명	0	
의 회	19명	19명	0	
직속기관	93명	146명	53	○ 증 (53) 지도관4, 지도사49
사 업 소	55명	55명	0	
출 장 소	11명	11명	0	
읍 면 동	352명	352명	0	

□ 정원조정내역

○ 직속기관 ——— 53명 증

- 지도관 : 4 (소장1, 과장 3)
- 지도사 : 49명 (농촌지도사 44, 생활지도사 5)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중 직속기관 정원 "93"을 "146"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	비	고
제2조 (정원의 총수) 파주시의 본청 소 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 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	제2조 (정원의 총수) _____ _____ _____			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	
1. (생 략)		1. (현행과 같음)				
2. (생 략)		2. (현행과 같음)				
3. 직속기관 : 93명		3. 직속기관 : 146명				
4. (생 략)		4. (현행과 같음)				
5. (생 략)		5. (현행과 같음)				
6. (생 략)		6. (현행과 같음)				

●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

법률시행령(1994·12·31)
대통령령제14497호

개정 1995·7·1 대통령령제14709호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특별시·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)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·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95·7·1>

제3조 (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)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 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)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95·7·1>

제5조 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)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95·7·1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·특별시의 시장 및 도의 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5인, 이사관 43인, 부이사관 65인, 서기관 128인으로 하고,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관 16인, 부이사관 87인, 서기관 127인으로 한다. <개정 95·7·1>

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행정공무원 정원 24인(서기관)과 지도공무원 정원 121인(농촌지도관 9, 농촌지도사 90, 생활지도사 22)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시·도에 그 초과

(후 62)

[별표 1] <개정 95.7.1>

특별시·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

국가공무원정원표(제2조관련)

총 계	16
정무직 계	2
부시장	2
일반직 계	14
관리관	14

[별표 2]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

국가공무원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 직급	합계	경기 도	강원 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라 북도	전라 남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	제주 도
총 계	179	20	21	20	22	20	21	23	21	11
일반직 계	179	20	21	20	22	20	21	23	21	11
농업연구관	76	8	9	8	10	8	9	11	9	4
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	9	1	1	1	1	1	1	1	1	1
농촌지도관	35	4	4	4	4	4	4	4	4	3
생활지도관	8	1	1	1	1	1	1	1	1	
농업연구사	51	6	6	6	6	6	6	6	6	3

(주 62)

경 기 도

☎ 441-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/ ☎(0331)249-4092 / FAX 249-2228 담당 조철영

문서번호 자치 12200 - 3664
 시행일자 1996. 12. 17. (년)
 (경유)
 받 음 받는곳 참조 (따주)
 참 조 시정.총무.내무과장

선결			지	
접	일자 시간	1996. 12. 16	시	
수	번호	23524	결	
처 리 과			재 : 공	
담 당 자			람	

제 목 '97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

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
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전환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인사운용등
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- o 지방자치단체의 직제, 정원조례(규칙)개정 : 12월말까지
- o 지방직화 시행에 따른 인사조치 : '97.1.1

덧붙임 : 1. 지방직화에 따른 시행지침 1부
 2. 자치단체별 정원승인서 1부. 끝.

경 기 도 지 사

받는곳 : 러 (01, 02, 03, 04, 05, 07, 10, 13, 15, 17, 19~31)

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지방직전환에따른 시행지침

□ 시행방침

- 「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
(대통령령)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
-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전환은 정원규칙상에 명시된 기관·부서에서 현직급으로 전환 원칙

□ 지방직화 계획

○ 현 황



구 분		정원	지방직 전환		국가직 존 치
			'97	'98	
계		1,009	948	31	30
도	소 계	138	108		30
	행정분야	24	16		8
	소방분야	2			2
	농촌연구직분야	79	65		14
	농촌지도직분야	33	27		6
시·군	소 계	871		31	
	행정분야	31		31	
	농촌지도직분야	840	840		

○ 농촌지도직

-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'96 지방양여금법을 개정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%사업비 형태로 조치되었음
- 농촌지도소가 없는 지역의 조직정비 및 정원 재배치
 - 농촌지도소가 없는 9개시의 농촌지도상담 인력배치 문제는 '97. 1. 1이후 농촌지도소조직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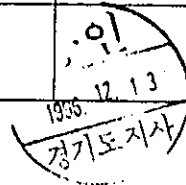
□ 행정사항



- 지방자치단체의 직제·정원조례 개정 : 12월말
 - 정원조례시행규칙 포함
- 지방직화 시행에 따른 인사조치 : '97. 1. 1

定 員 承 認 書

기 관 명	직 급	정 원	비 고
파 주 시 농촌지도소	지방농촌지도관	4명	소장 1, 과장 3
	지방농촌지도사	44명	
	지방생활지도사	5명	
	농촌지도관	△ 4명	
	농촌지도사	△ 44명	
	생활지도사	△ 5명	
	계	0	



※ 정원시행일 : 1997년 1월 1일

— 이 하 여 백 —